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82
----------	-------

발의연월일 : 2026. 1. 7.

발 의 자 : 송재봉 · 복기왕 · 임미애
전종덕 · 박 정 · 남인순
김남희 · 이용선 · 박지혜
이연희 · 김우영 · 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규정을 두어 특약매입, 매장임대, 위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사태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들이 대금 회수에 불안을 느끼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상품판매대금 지급의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동시에 대규모유통업자의 파산 등의 경우에도 영세한 납품업체 등이 안전하게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판매대금의 정산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체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도록 하고, 판매대금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대규모유통업자 파

산 등에도 납품업체의 판매대금이 안전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부터”를 “제8조의2, 제11조부터”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0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0일”을 “20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품대금”을 “상품대금(이하 “상품판매대금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상품판매대금등”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상품판매대금 등의 보호)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판매대금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상품판매대금등의 예치만을 위하여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계좌에 예치.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예치한 금전이 납품업자등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에 가입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되는 상품판매대금등을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되는 상품판매대금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상품판매대금등을 납품업자등의 청구에 따라 해당 납품업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업자등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기관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상품판매대금등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품판매대금등을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되는 상품판매대금등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납품업자등,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리기관이 별도관리하는 상품판매대금등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⑥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상품판매대금등의 범위 및 산정방법, 그 밖에 상품판매대금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중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로,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의 지급,”을 “상품판매대금등의 지급 및 보호,”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품판매대금 등의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이하 “임차료 등”이라 한다)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본다.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 ----- ----- ----- ----- ----- ----- ----- ----- <u>제8조의2, 제11조부터</u>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u>40일</u>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 ----- ----- ----- <u>10일</u>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② -----

-----20일-----

-----.

③ -----

-----상품대금(이하 “상품판매대금등”이라 한다)-----

-----.

④ -----
-----상
품판매대금등-----

-----.

제8조의2(상품판매대금 등의 보호)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
판매대금등의 100분의 50 이상
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상품판매대금등의 예치만을 위하여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계좌에 예치.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예치한 금전이 납품업자등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에 가입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되는 상품판매대금등을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되는 상품판매대금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상품판매대금등을 납품업자등의 청구에 따라 해당 납품업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업자등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기관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상품판매대금등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품판매대금등을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되는 상품판매대금등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납품업자등,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리기관이

제32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
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
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
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
규모유통업자에게 법 위반행위
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상품
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의 지
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계
약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
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
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등에 대한 통지, 법위
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나 그 밖에

별도관리하는 상품판매대금등
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
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
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⑥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상품
판매대금등의 범위 및 산정방
법, 그 밖에 상품판매대금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illegible]

